

의 정 정 보

2008 - 11

11. 11.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4
3.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36
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47
<부록1> : 행복한 책임기	76

▣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전국단위 행사에서의 기념품 등 제공	——	1
2. 창당기념행사에서 음식물 등 제공	——	4
3. 지방자치단체 장의 TV광고 출연	——	5
4.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7
5. 당선자의 성명을 주소로 하는 공약사이트 운영	——	8
6. 정당활동을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	——	9
7. 당원협회의 컴퓨터교실 운영	——	1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전국단위 행사에서의 기념품 등 제공

《질 의》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에 앞장서고 계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 10. 17부터 4일간 순천만에서 개최되는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요

1. 기 간 : 2008. 10. 17.(금) ~ 10. 20(월) 4일간
2. 장 소 : 순천만, 순천시 일원
3.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4. 주 관 : 순천시, 평생교육진흥원
5. 후 원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평생교육학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6. 참 석 : 전국민
7. 주요내용 : 전국의 평생학습도시(76개) 및 지역정보센터(16개)가 참여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 및 기관·단체, 기업체 등 참여프로그램 운영
전국 학습도시 동아리 경연대회, 각종 이벤트행사 등
8. 예산규모 : 총 18억원(교육과학기술부 3억, 전라남도 3억, 전남교육청 3억, 순천시 9억)

9. 평생학습축제 연혁 : *첨부파일 참조*

※ 제8회 개최지역은 경기도 구리시로 선정되었음.

□ 질의내용

○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상기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고 순천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전국단위 축제이며 축제준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장인 순천시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별도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체로 운영하고 있음.

※ 조직위원회 : 축제조직운영의 대표기구

· 명예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공동위원장 : 순천시장, 평생교육진흥원장

※ 축제운영위원회 : 축제운영 총괄

· 위원장 : 순천시 부시장

○ 축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념품과 경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행사로서 평생학습 축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스탬프렐리 책자를 배부하고 배부된 책자에 각 부스에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날인해 주는 스탬프(도장)를 일정수량(약 20개) 날인받아 오면 기념품(그림엽서 1매, 단가 1,000원)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본 사례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스탬프렐리제란 : 행사관심유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써 축제참가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정수량의 스탬프를 종이에 날인 받아오면 약속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제도임.

2. 질문 1과 유사한 경우로서 축제장을 포함하여 우리지역 관광지 5개소를 모두 관람하고 스탬프(도장)를 날인받아 오면 기념품(지역생산쌀 3kg 1개, 단가 10,000원)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본 사례의 경우에도 공직선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축제개막식 행사종료후 개막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번호추첨을 통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협찬받은 자전거,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개막식참석자 : 순천시민을 비롯한 전국에서 찾아오는 일반 국민

4. 축제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중 OX퀴즈풀이가 있는데 최종 퀴즈정답자에게 일정물품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참고로 전국평생학습축제는 금년이 7회째로 지난해 창원시에서 개최하였던 6회 축제 등 지금까지의 축제에서는 경품추첨과 스템프릴리제를 시행하였던 사례가 있음. (2008. 9. 22. 순천시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단위의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최기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에서 그 행사참여자에게 기념품·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이 상당수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8. 10.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② 창당기념행사에서 음식물 등 제공

《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창당 1주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정당행사 세미나 및 리셉션 개최에 따른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합니다.

□ 행사개요

1. 일 시 : 2008년 10월 30일 18:00
2. 장 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대회의실
3. 참가예상인원 : 200명 내외
4. 대상자 : 당원, 당직자, 타당 대표나 의원, 시민단체, 언론사 등 비당원 포함
5. 주요행사내용 : 인사 및 축하떡 자르기, 건배제의 등

□ 질의내용

1. 참석자들에게 식사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공이 가능하다면 제한금액이 얼마인지?
2. 참석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공이 가능하다면 제한금액이 얼마인지?
3. 참석자들에게 떡, 음료 등 간단한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제한금액이 얼마인지?
4. 기타 제공이 가능한 음식물이나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그 종류, 가액 등은 얼마인지?
5. 문1 내지 4가 불가능하다면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가액에 상응하는 입장료를 받을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2008. 9. 29. 창조한국당 대표 자 질의)

《답 변》

1. 문 1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창당기념행사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물·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5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행사참석자가 음식물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08. 10.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TV광고 출연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번주소체계를 국제표준의 도로명주소체계를 도입하고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주소(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사업이 국민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해당 지역별로 집행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출연하는 지상파 TV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위 광고에 시도지사가 출연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TV광고개요〉

- 송출시기 : 2008. 10. 5 ~ 11. 30
 - 홍 보 물 : 40초 분량의 홍보동영상(캠페인)
 - 홍보매체 : 지상파TV(전국 또는 지역단위 KBS, MBC, SBS)
 - 내 용 : 지번주소의 문제점, 새주소 효용성을 실생활의 상황중심으로 전달
 - 핵심메시지 : 지번주소의 문제점 ⇒ 새주소도입 및 안내 ⇒ 기대효과·의의
 - 시도지사는 자기지역 홍보멘트를 7~8초 분량으로 제시
- (예시 : “강원도로 관광가는 길, 새주소로 시작하면 편리합니다”) (2008. 10. 2. 행정안전부장관 질의)

《답 변》

귀문과 같이 선거가 임박하지 아니한 시기에 중앙정부가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방송광고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출연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구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출연하게 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출연기간을 벗어나 상당한 기간을 출연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게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때에는 광고시기 및 양태에 따라 광고에 출연하게 한 자와 출연한 자 모두 「공직선거법」 제9조·제93조·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임. (2008. 10.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거법에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제3호 :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 무자)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 나목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질문사항》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제3호의 마지막 문구인 “기관·단체의 임·직원”이라 되어 있는바, 임·직원이라 함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제10호, 제11호가 모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제10호는 임원만 해당되고 제11호는 특정공무원과 직원만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16. 이정묵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그 임원과 직원을 말하는 것임. (2008. 10.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⑤ 당선자의 성명을 주소로 하는 공약사이트 운영

《질 의》

한글도메인 공약.kr(매니페스토.kr)을 이용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배경

2007년 질의회신에 따라 선거구.공약.kr(<http://강동구청장.공약.kr> 등)을 모든 당선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무상 연결하여 유권자 매니페스토에 일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준비하던중 지자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선거구를 이용한 방법보다는 당선자의 본명을 이용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되었기에 아래의 질의를 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공직 당선자뿐만 아니라 ○○중.공약.kr, ○○대학교. 공약.kr 형식으로 활용되어 예비유권자에게 공약중심의 매니페스토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 질의내용

1. 시기 및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당선자의 공약을 당선자명.공약.kr의 연결주소를 이용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쉽게 확인토록 하는 행위 (단, 동명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국회의원을 우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2. 공직당선자의 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당선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의 공약 관련 콘텐츠에 당선자명.공약.kr, 선거구.공약.kr 등을 연결하는 행위 (2008. 10. 17. 네티주소 정우석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08. 10.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⑥ 정당활동을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여성정치아카데미 등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강좌를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

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정당의 당직자인 디지털정당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당내경선은 정당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입니다. 이 경우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한나라당 당헌 제55조(구성 및 기능) ①당의 디지털정당 구현 및 인터넷에서의 당 지지세 확산, 네티즌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당위원회를 둔다. ②~④(생략)

⑤디지털정당위원회는 제18조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 디지털정당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한나라당 당규(디지털정당위원회규정)

제 3 장 전국네티즌대회

제 1 절 목적 등

제7 조(목적) 디지털정당위원회는 당헌 제18조제11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네티즌대회를 개최한다.

제 2 절 디지털정당위원장 및 네티즌상임전국위원 선출

제11조(대의원의 구성 및 임기) 전국네티즌대회의 대의원은 전국네티즌대회 종료일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의 일반국민 중 선거인으로 신청한 자로 하며, 임기는 다음 전국네티즌대회 선거인단 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제15조(후보자 및 선거인단 공모) ①후보자를 당내외에 공개모집하되 모집방법과 모집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생략)

3. 문 2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그 당내경선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자

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 정당이 해당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 정당이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그 홍보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공모전을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08. 10. 24. 한나라당 사무총장 안경률 질의)

《답 변》

문 1 내지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활동에 필요한 목적 범위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 93조 등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8. 10.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7 당원협의회의 컴퓨터교실 운영

《질 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정보소외계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컴퓨터교

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계획하에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가 정보소외계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시 관내 25개 당원협의회별 명의로 정당 당사가 아닌 서울시 관내 특정 건물에서 컴퓨터교실을 상시 또는 수개월씩 부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문 1과 관련하여 당원협의회별 명의로 컴퓨터교실 운영이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거나,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의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문 1과 관련하여 당원협의회별 명의로 컴퓨터교실 운영이 가능한 경우 지역의 사회단체로부터 강당을 무료로 대여 받아서 컴퓨터교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 문 1과 관련하여 당원협의회별 명의로 컴퓨터교실 운영이 가능한 경우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5. 문 1과 관련하여 당원협의회별 명의로 컴퓨터교실 운영이 가능한 경우 컴퓨터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전단지를 서울시 관내 주민에게 배부하거나 서울시 관내 지역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전단지 내용 : 강의 내용, 정당명의, 수강료, 일시와 장소, 연락처
(2008. 9. 1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상규 질의)

《답 변》

1. 문 1·2·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원협의회가 시·도당의 계획하에 정당의 경비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고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컴퓨터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에 이르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선전하거나 무료 또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정당법」 제37조제3항,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 「공직선거법」 제89조·제103조·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통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시설관리규정 등에 따라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기부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컴퓨터교실을 안내·홍보하기 위하여 인쇄물 또는 현수막에 정당의 명의를 표시하여 거리에서 배부·게시하는 것은 그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1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4
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6
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7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9
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
6.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2
7.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24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5
9.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	26
1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7
11. 향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전부개정령	——	29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31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33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34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062호, 2008.10.07. 공포)

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며,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수도권 외 광역시의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안 제156조제1항)

- (1)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함.
- (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안 제167조의5제1항제1호)
-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 (1)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063호, 2008.10.07. 공포)

1. 개정이유

주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고,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안 제92조의2)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92조의11)

(1)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069호, 2008.10.08. 공포)

1. 개정이유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8834호, 2007.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수 등의 지급주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관서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의 복제 기준 마련(안 제61조)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의 제복·명찰·모자 등 복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복무기관의 장도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복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추천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지금까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지정업체선정원서와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함.

다.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별 인원배정 절차 개선(안 제75조)

현재 전문연구요원을 지정업체별로 배정하고 있으나,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가 다수인 경우 법인 차원의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문연구요원 배정 시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정업체별로 배정하도록 함.

라.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제한 요건 완화(안 제85조)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의 제한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요원의 파견근무 범위 확대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87조 및 제93조)

지금까지 공동연구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을 파견하는 경우 지정업체 간 파견만 허용하였으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된 연구소에 대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산업기능요원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조정(안 별표 2)

5년제 대학과정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필요한 학력별 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자격증 응시자격이 다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법령 간 불일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사.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안 별표 3)

종전에는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이면 연장 종사, 1월 이상이면 편입 취소를 하였으나,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1월 이상인 경우에도 연장 종사를 하도록 하는 등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완화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075호, 2008.10.08. 공포)

1. 개정이유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의 기준을 구의 설치 여부로 정의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나친 인상과 지역 간 편차 발생 등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의 합리적인 기준액과 그 지급범위를 제시하며, 의정비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 50만 이상 시 기준 재정립(현행 제10조제1항 삭제, 안 제118조 신설)

- (1) 종전에는 인구 50만 이상 시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로 정의하였으나, 이를 원래의 법 취지에 맞게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 연속 50만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정의함.
- (2)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한 특례 적용에 관한 혼란이 방지되어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시(안 제33조제1항 제3호, 안 별표 7 신설)

-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주민수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과

그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해소되고,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안 제34조)

- (1)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보다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교육계,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며,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함.
- (3)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고, 심의위원 위촉과정의 합리성과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임성이 확보되어 의정비가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공포)

1.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안 제6조제1항제6호)

-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안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 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801호, 2008.10.14. 공포)

1. 개정이유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이수능력은 있으나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특수교육대상자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재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위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이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 시행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재교육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 (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도록하고 있는바,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소외계층이 많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재교육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2) 영재교육 이수능력이 있으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자에 특수교육대상자도 포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기회를 확대함.

나.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자격기준 완화 등(안 제25조제2항, 안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 신설)

- (1) 영재학교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나 일정한 경력과 학위 소지 여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2) 영재학교에 두는 교원 중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경력, 학위, 임용기간 등의 조건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임용희망자 중 해당 분야에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초·중등교원의 영재교육기관 파견 또는 겸임근무 근거 마련(안 제28조)

대학의 교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을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나, 초·중등교원의 경우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파견 또는 겸임근무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초·중등교원 파견 또는 겸임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 할 수 있는 범위에 초·중등교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라. 일반교원 연수 시 영재교육 내용 포함 근거 마련(안 제31조제4항 신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교사 추천이 필수 요건이나 일반교원의 경우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과정에 영재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9호, 2008.10.27. 공포)

1. 제정이유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 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천에 대하여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온천법」이 전부개정(1995. 12. 30. 공포, 1996. 7. 1. 시행)된 이후, 그 동안 마련하지 못했던 보양온천의 구체적 지정기준과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조 및 제3조)

보양온천의 지정에 필요한 온천수, 보양온천 시설, 주변 환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보양온천의 지정 및 승인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휴양에 적합한 보양온천이 지정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양온천 지정의 취소(안 제4조)

보양온천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양온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양온천이 지정되면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도록 함.

다. 보양온천에 대한 지원(안 제6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 국민이 보양온천을 보다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양온천의 원활한 조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 각종 재정적 지원,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⑧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40호, 2008.10.31.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자전거 등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벌점 부과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었으나 운전면허와 관계없는 법규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앞으로는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자전거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전면허 미소지자와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⑨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호, 2008.10.02. 공포)

1. 개정이유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신고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품종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화훼류의 경우에는 신고 건수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작물별로 차등 부과하던 품종보호 수수료를 단일화 하며,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을 법률에 맞추어 1년 단위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년생 화훼류의 품종신고 수수료 인하(안 제5조제5호)

- (1)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신고 수수료를 품종별 3만원으로 일괄부과 하고 있어 소량 다품종이고 매년 품종 패턴이 바뀌는 화훼류 종자는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커 무등록종자 유통 또는 종자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있음.
- (2) 품종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품종신고 수수료를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에는예외적으로 25품종 단위의 신고 건수별로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3) 화훼류 품종의 신고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화훼류 품종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종자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개선(안 제9조)

- (1) 「종자산업법」에서는 매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칙에서는 품종보호료 최초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현행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매년 납부하도록

하고,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여러 해 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품종보호료의 단일화(안 별표)

- (1) 현행 품종보호료는 작물을 1군부터 3군까지로 분류하여 차등부과하고 있으나, 작물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차등부과 사유가 합리적이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2) 작물별로 차등부과하던 품종보호료를 단기 품종보호료는 하향 단일화하여 육성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 품종보호료는 인상하여 품종보호권을 과도하게 유지하는 것을 억제함.
- (3) 단기 품종보호료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육성자의 부담 경감과 품종보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장기 품종보호료를 인상하여 보호기간 단축을 유도함으로써 신품종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호, 2008.10.15. 공포)

1. 개정이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78호, 2007. 1. 3.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과 방법, 출하제한의

기간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류 간소화(현행 제19조제2호다목 삭제)

법인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중에서 임원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경매사 임면 신고기간 연장(안 제20조제2항)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에 따른 업무처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 신고기간을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함.

다.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안 제35조의2 및 별표 1 신설)

- (1) 법률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실시하여야 할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안전성 검사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검사체계·검사시기와 주기·검사 품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시료는 종류별로 경매 전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매상에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출하제한 기간 등을 각각 정하고, 출하제한 시에는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함.
- (3)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과 기준 미달품에 대한 출하제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최고한도 폐지(안 제39조제5항)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삭제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I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전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61호, 2008.10.24. 공포)

1. 개정(제정)이유

시설장비의 제조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감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592호, 2008. 1. 31.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시설장비 제조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기준과 장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소형 이동시설장비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여 시설장비관리자의 비용부담 경감과 시설장비의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연기신청 기간 등(안 제5조)

정기검사 연기신청 사유에 천재지변, 사고발생 등을 추가하고 연기신청서의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불허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나. 소형 이동시설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면제대상(안 제6조 및 별표 1 제3호)

소형 시설장비에 대한 검사비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대상에서 스트래들 캐리어, 야드 트랙터, 야드 사시 등을 제외하고, 정기검사 면제대상에 리치스택커, 야드 사시, 모빌하버 크레인을 추가함.

다. 시설장비 제조의 책임감리 또는 감리에 투입할 기술인력 기준 등(안 제10조제2항 신설)

시설장비의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장비 제조의 책임감리 또는 감리 시 투입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은 기계분야 책임검사원 한 명 이상, 전기 분야 주임검사원 한 명 이상 등으로 정하고, 검사시설은 갭(Gap) 측정기, 진동 측정기, 다이얼(Dial) 측정기 등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63호, 2008.10.31. 공포)

1. 개정이유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명사상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9조제4항)

- (1) 인명사상사고 등 화물운송사업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협회가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 협회는 교통법규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따른 밤샘주차 제한 규정 보완(안 제21조제2호의3 신설)

- (1)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밤샘주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게 됨.
- (2)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밤샘주차 제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

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재정지원 대상 확대(안 제43조)

- (1) 국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의 공영차고지의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의 경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유가 인상액의 보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 투자,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를 추가함.
- (3) 이와 같이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별표 1)

- (1)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2)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02호, 2008.10.10. 공포)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개(안 제7조제4항 신설)

- (1)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입주민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함.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3) 이와 같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 공기질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안 별표 5)

- (1)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시간당 4밀리그램으로 하고 일반자재는 제곱미터당·시간당 1.25밀리그램으로 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10년까지는 제곱미터당·시간당 0.5밀리그램으로 하고, 2011년부터는 0.12밀리그램으로 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은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시간당 10밀리그램으로

로, 일반자재는 4밀리그램으로 하던 것을 접착제는 2밀리그램으로 강화하고, 일반자재를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그 기준을 조정하고, 톨루엔 방출기준을 신설하여 제곱미터당·시간당 0.08밀리그램으로 함.

- (3) 이와 같이 방출기준을 신설·강화함으로써 건축자재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05호, 2008.10.21. 공포)

1. 개정이유

가정 등에서 대형폐기물로 분리·배출된 폐가구류·폐가전제품은 매립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하거나 소각하도록 하는 등 그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임목폐기물과 원목의 제재부산물(製材副産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수집·운반하는 자에게도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가구류·폐가전제품의 처리방법[안 별표 5 제1호다목2)]

- (1) 폐가구류나 폐가전제품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나, 현재는

해체·압축 등을 거친 후 매립하도록 하고 있음.

- (2) 종전에 해체·압축 등을 거친 후 매립할 수 있도록 하던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 중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되어 수거된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된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폐가구류 등의 자원순환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면제 대상 확대(안 별표 5 제6호나목 신설)

- (1) 임목폐기물과 제재부산물은 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고 수거되는 경우 전량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집·운반할 때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2) 나무뿌리·가지 등의 임목폐기물과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톱밥 등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이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의무를 면제함.
- (3) 이와 같이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임목폐기물 등을 운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목폐기물 등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 36
(대전광역시의회)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0
(대구광역시의회)
3.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안 ——— 42
(전라북도의회)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89
----------	-----

발의연월일 : 2008년 9월 25일

발 의 자 : 광영교 의원 외 7 인

1. 주 문

-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으로 대전광역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국가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을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은 소모적 논쟁과 진통을 최소화하면서 과밀화로 죽어가는 수도권과 공동화로 죽어가는 지방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국가 최대 역점사업이어야 함.

나. 그 당위성으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정책이행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신뢰받는 정부상을 구현한다는 점, 현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기조에 부합한다는 점, 배후 거점도시 대전권역 발전과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으로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음.

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위한 예산책정, 이전대상 정부부처 변경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법안 처리 등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수반되어야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우리 150만 대전시민은 새 정부 출범 후 대전·충청권 홀대나 정국혼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절의 고장에서 살아온 후손답게 분노보다는 인내의 미덕으로 대국의 뜻을 기리며 정국상황을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인내는 우리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겨질 우려가 있어, 오늘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충청권 주민 모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며, 동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으로는,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은 효율적인 정부를 정책기조로 지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 정부는 과밀화로 죽어가는 수도권을 살리면서, 공동화로 죽어가는 지방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목적으로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면서 오랜 진통 끝에 만들어진 국가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정부부처 변경고시 지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 예산의 축소배정, 세종특별자치시 법안 자동폐기 및 처리지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건설 의혹과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추진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합니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은 현 정부가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준수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신뢰받는 정부상 정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전·충청권 주민과 현명한 국민 모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진통과 국민적 합의의 산물로 만들어진 결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런 합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정책변경은 대전·충청인 모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 정부에 대한 극심한 불만과 염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끊임없이 확인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원칙과 신뢰를 준수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은 배후 거점도시 대전권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충청권역은 물론 수도권과 영·호남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소요될 예산책정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대상 정부부처를 조속히 변경 고시하고, 국회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세종특별자치시법안 처리 등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08. 9.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통령
2. 대통령실 정무수석
3. 대통령실 경제수석
4.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5.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
6.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7. 국무총리
8. 국무총리실장
9. 교육과학부장관
10. 행정안전부장관
11. 지식경제부장관
12. 환경부장관
13. 국토해양부장관
14. 국가정보원장
15. 국회의장
16.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7. 한나라당 대표(정책위원회 의장)
18. 통합민주당 대표(정책위원회 의장)
19. 자유선진당 대표(정책위원회 의장)
20. 창조한국당 대표(정책위원회 의장)

[자료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http://council.metro.daejeon.kr>]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08년 10월 20일
발 의 자 : 양 명 모의원외 6인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한다.
- 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지로서 관련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에 제정되어 향후 30년간 총 5조원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생산유발효과 82조 2천억원, 고용창출효과 38만명에 달하는 사업이다.

- 정부는 의료복합단지 세부기준과 방안을 마련한 뒤 금년 연말까지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에 있어, 대구를 비롯한 서울과 대전, 충북과 강원 등 10여개 자치단체가 치열하게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다.
- 우리 지역은 6개의 의과대학과 4개의 대학병원 임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수성의료지구”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등 어느 지역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지난 9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일환으로 지역 관련인사 49명으로 구성된 대구경북의료산업육성자문단이 발족된 바 있으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유치활동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 우리시 의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충북 청원의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국내 의료·바이오 산업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와 토론을 벌인 바 있으며,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 대구·경북지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자료출처 : 대구광역시의회, <http://council.metro.daegu.kr>]

③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78
----------	-----

발의년월일 : 2008. 10.

발 의 자 : 고영규의원 외 12명

1. 제안이유

- 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나.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도지사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도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바. 도지사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사. 도지사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생략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 생략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사업평가 등에 관한 예산 필요

다. 기 타

- 입법예고 : 생략(의원발의)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3.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제3조(전라북도의 책무) 전라북도(이하“도”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임신·출산·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① 도지사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도지사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고령자 고용과 소득 지원) 도지사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증진과 생활환경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고령자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을 위한 주거·이용시설·의료·요양제도 등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전라북도의회, <http://assem.jeonbuk.kr>]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2012년까지 범정부 정보자원 30% 통폐합	——	47
2. 주민투표제도 개선으로 주민참여 확대 및 공정성 강화	——	49
3. 도로·교통안전시설 예산낭비 없앤다	——	52
4. “행정구역에 따라 달랐던 도로이름, 하나로 만든다”	——	58
5. 구비서류 없는 민원처리 『e하나로민원』 서비스 확대	——	62
6. 중증장애인 공직문호 대폭 확대	——	64
7. 농공단지 덩어리 규제 집중 개선 추진	——	66
8.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	——	68
9. 2008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역 선정	——	69
10. 재난복구 관련 예산집행 신속성 대폭 확대	——	71
11. 불이익 처분시 청문실시 확대로 국민권익보호	——	72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① 2012년까지 범정부 정보자원 30% 통합

－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부처의 전산자원과 웹사이트의 30%를 통·폐합하고,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마련, 10.7(화) 국무회의에 보고 하였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 정보화 촉진정책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선도국가에 진입하였고, 또한 대전 및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전산장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나, 기관별 정보화 추진으로 전산장비의 중복투자, 웹사이트 난립, 수요자관점에서의 서비스 단절현상 발생 등 운영상의 한계가 노출되어 범정부 차원의 정보자원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번 정보자원 통합계획안은 크게 정부 전산장비 통합, 웹사이트 정비, 대국민서비스 통합으로 나뉘며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보자원통합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 중앙부처의 전산자원은 2012년까지 30%이상 통합 또는 재조정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30%(2,895억) 절감하고, 정부 웹사이트는 2010년까지 전체수의 30%(501개→350여개)를 감축할 계획이다.
 -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등 전산자원 통합추진 원년인 2009년에는 범정부 전산자원 통합구축을 위해 34개 부처의 68개 정보화사업의 전산장비 도입예산을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정부통합

전산센터)에 429억원 규모를 일괄 편성하여 통합구축함으로써 개별 구축 대비 약 30%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 '09년 중앙부처 전산장비 통합구축시 개별구축대비 30%절감

(개별구축시 612억원 → 통합구축시 429억원(△183억 절감))

- 또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핵심서비스를 발굴하고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의 처리시간을 30%이상 단축하고 활용율을 현재 41% 수준에서 60%까지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정부 정보자원 통합은 금년 10월 정보자원 통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 통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와 협의한 후 금년말 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부터 본격적인 정보자원 통합을 실시 할 계획이다.
- 한편, 이명박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편성하는 행정안전부의 '09년 세출예산안은 '08년 보다 3.9% 증가한 33조 5,853억원 규모로, 그 중 일반회계는 33조 1,394억원(↑3.8%), 특별회계는 4,459억원(↑2.5%)으로 편성하였다.
-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교부금 29조 9,812억원, 연금부담금 1조 8,042억원, 주요사업비 1조 1,256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사업 4,364억원 등이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 ① 효율적이고 신뢰성있는 선진 국가정보화 실현
 - ②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과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 ③ 지역발전 및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② 주민투표제도 개선으로 주민참여 확대 및 공정성 강화

－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투표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7)되었다고 밝혔다.
-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2004년 도입·시행되었다.
 - 제도시행 이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등 3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지역 현안 및 고질적 국책사업 등에 대한 민주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 일부 운영상 미비점, 투표과열에 따른 불공정 시비 등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결정(‘07.6.28)을 내림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 투표운동 금지자의 조정, 제한적 투표운동 허용 등을 통해 주민의 자유로운 공론형성과 합리적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 공무원의 투표관여행위 금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화 등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주민투표권의 확대

- 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공직선거 등과 같이 19세로 낮췄으며,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함

※ 19세 인구 : 62만명(제18대 총선), 거소신고 재외국민 : 6만2천명('08.8)

② 투표운영 규정의 보완

-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을 발의일에서 투표일전 19일로 공직선거 등과 일치시켜 타 투표와의 동시실시에 대비하고, 투표사무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8시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간의 법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을 없앴
-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전부 거소투표하던 것을 거동불능자와 해당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만 거소투표를 하도록 하여 거소투표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함

③ 투표안전 홍보규정의 보완

- 선관위의 투표참여 등에 대한 홍보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선관위의 투표참여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보장함
-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단체장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게 투표안전에 대한 의견표명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투표안전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등”을 게재한 주민투표 인쇄물을 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고, 선관위는 발송만을 함으로써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함

④ 투표운동규정의 보완

- 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 행위뿐만 아니라 “부쳐질 사항”에 대한 행위도 투표운동에 포함시키는 한편, “투표참여 등에 대한 단순한 홍보행위”와 “투표운동 준비행위”를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투표운동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함
-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국회의원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통·리·반장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주민투표가 예상되는 특정시점부터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제한적 투표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투표안전에 대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투표운동기간 전에 행해지던 사실상의 투표운동을 법 테두리 내로 수용함

⑤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의 실효성 강화

- 선관위는 부정행위 조사·단속을 위해 “주민투표부정감시단 및 사이버 주민투표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 시설·선전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집행·조사·단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활동의 보장 및 투표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명활동자 폭행 및 서명부 훼손 행위, 투표사무 종사자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주민투표 모형 훼손·오손자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그 밖에 투표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 주민투표 범죄의 공소시효(6개월) 규정을 신설함

③ 도로·교통안전시설 예산낭비 없앤다

- 행안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표본조사결과 연130억원 상당 예산 낭비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개 도와 10개 시·군(전 지자체의 10%)을 대상으로 최근 2년 6개월 동안 설치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표본조사 한 결과, 연 13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매년 130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에 연간 1천 1백억원 이상 투자되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노력이 부족하고 관행적·무계획적·땀질식으로 업무가 이뤄져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비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 다양한 문제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경북 등 4개 도와 고양·포항시 등 10개 시·군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총74건의 잘못을 적발하여 행정상으로 주의 또는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과다설치하거나 과다 계상된 21건, 19억원 상당을 감액토록 했다.
- 또한 부실·부족 시공한 6건, 1억원 상당을 회수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의성이 농후하고, 과실이 큰 관계공무원 30여명은 엄중 문책토록 하였다
- 이와 함께 불합리하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총 12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 대안들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번 조사 결과,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는 주 원인은 도로·교통안전 시설이 주로 소규모로 집행되는데다 관계공무원들의 관심 및 업무 연찬부족 등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같은 기능의 시설물 중복설치, 규정에 없는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사례 등이 있었다.
- 또한,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정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땀질식·관행적으로 추진한 것도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계공무원 스스로가 많은 예산을 부당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효과”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모범사례 및 개선 방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전파, 자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일제교육을 실시해 관행적인 문제점과 심각성, 개선 필요성 등을 깊이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향후 조사·감사과정에서 이행실태를 중점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다수의 무관심과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도로·교통안전시설 분야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민간인 및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첨부자료 1

주요 지적 사례

- ① 주요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곳에 설치함으로써 상당액의 예산낭비
 - 도로표지병을 시가지 8m, 지방도로 13m, 전용도로 20m 간격보다 과다설치하거나, 불필요한 곳(횡단보도·교차로 정지선)에 설치
 - 시선유도봉을 일반구간 2~5m, 예고5~10m 등 기준간격보다 촘촘하게 설치하거나 불필요한 곳(중앙분리대 좌·우)에 설치
 - 유사기능인 시선유도·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을 동일지역에 중복으로 설치
- ② 교통·도로표지판 기초공사시 표준규격에 미달되게 부설·부족 시공하거나 차선도색후 반사휘도 측정없이 부당 준공처리
- ③ 교차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전방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1,732개소에 설치하지 않음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 초래
- ④ 일반경쟁 입찰을 피하고 특정업체들과의 수익계약을 위해 단일공사를 소규모로 분할발주, 특정업체 제품사양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제품구입
- ⑤ 사전에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2~3개월 간격으로 2개 부서에서 동일지역에 중복설치

첨부자료 2

주요 제도개선 과제

- ① 경찰서와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을 일원화**”
- ② 산출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설치비용차이가 많은 바, **건설표준품셈에 산출근거를 반영, 예산낭비 소지 제거**
- ③ 보행자나 도로변의 상가 등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신호제어기함의 규격을 축소토록 개선**
- ④ 설치기준이 모호하여 무분별하게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시내 중앙분리대 설치기준**』 마련
- ⑤ 교차로에서 우회전과 동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데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통행이 가능하여 교통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금지토록 개선
- ⑥ 교통안전시설은 소규모로 다량을 설치해야 할 시설특성상 부족·부실시공이 많은 바, **표준시방서를 마련**

첨부자료 3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종류

구 분	대 분 류	소 분 류	비 고
도로안전시설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봉, 표지병, 갈매기표지, 시선유도표지, 장애물표적표지, 구조물도색 및 빗금표지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분류함
	조명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교량용	
	충격흡수시설	충격흡수대	
	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도로반사경	
	장애인안전시설	점자블록, 연석경사로, 턱낮추기, 유도신호장치, 음향교통신호기	
	낙석방지시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옹벽	
	도로전광표지	도로전광표지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신호기	신호등, 신호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분류함
	안전표지	안전표지(주의 규제 등), 노면표지	
기타시설	블라드	블라드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상 도로·교통안전시설물로 분류함

도로 ·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시 설 명	사 진	사 용 용 도	비고
시선유도봉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 보조 *위험구간 예고목적으로 설치	
도로표지병		*야간 또는 우천시 운전자의 시선 유도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용 차선 등 노면표시의 기능 보완	
갈매기표지		*주 · 야간에 도로의 굴곡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수 있도록 안전 주행을 도모하는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표지 (텔레네이브)		*주 · 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도로구조를 안내해 주며, 운전자의 시선 유도	
미끄럼 방지포장		*자동차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의 마찰력을 증가시켜 자동차 제동 거리를 줄여주는 시설물 *곡선부, 경사가 급한 도로에 설치	
충격 흡수시설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충격을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시켜 줌	
교통표지		*교통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도로상황과 통행방법 등에 정보 제공	
볼라드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④ “행정구역에 따라 달랐던 도로이름, 하나로 만든다”

- 행안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앞으로 가로공원길(서울 금천구)·철산로(경기 광명시)처럼 하나의 도로에 대해 지자체마다 행정구역을 경계로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행안부(장관 원세훈)는 10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자치구에 걸친 도로의 구간설정과 명칭 부여권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군·구 단위로 도로명을 부여함에 따라 하나의 도로에 대해 행정구역을 경계로 다른 이름이 붙여져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같은 도로에 대해 가로공원길과 철산로로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고 도로명판을 각각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p3. 그림1 참조)
- 이처럼 도로명주소 법령 시행 전에 사업이 추진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같은 도로에 대해 행정구역을 경계로 지자체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해 왔으며, 법령 시행 후에도 상급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됨.
- 행안부 관계자는 “선진 외국의 경우 같은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경계와 관계없이 동일한 도로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체계적으

로 붙임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서, (p5. 선진 외국사례 참조)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간 도로명칭 일원화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찾기 쉽고 편한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또한,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유치, 국제교류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주소용 도로명과 함께 기업명칭 등을 명예도로명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와 변동 이력 등을 관리하는 공적장부인 ‘도로명주소대장’을 도입하고, 법률 명칭을 『도로명주소법』으로 간결하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참고자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참 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광역적 도로명 부여체계 마련

□ 추진배경

- 현재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도로에 대하여 기초단체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행안부장관과 협의토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 미흡

- 단순한 ‘협의’ 수준, 협의기관의 적극적 조정권한 행사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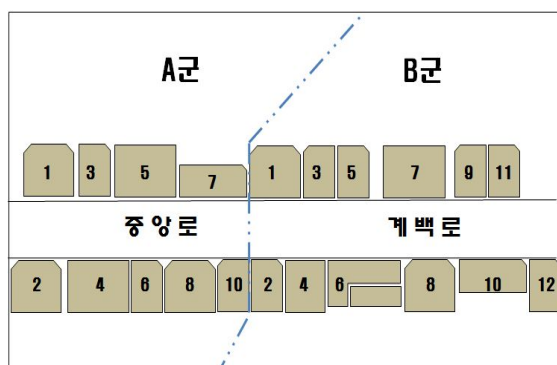
⇒ 행정구역을 경계로 같은 도로의 명칭이 달라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도로명 일원화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정절차가 미흡한 상황

□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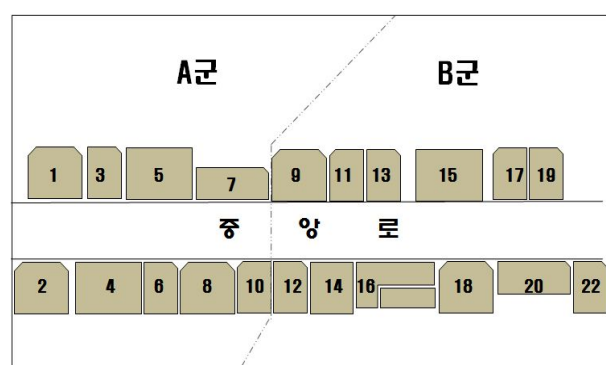
- 2개 이상 시·도, 시·군·자치구에 걸친 도로명주소 부여 권한을 각각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
(다만, 관련사항 결정시 해당 지자체장 의견청취 의무화)

⇒ 행정구역간 도로명을 통일되게 부여, 도로명주소의 위치예측성 제고

< 현 행 >



< 개 선 >



② 명예도로명 제도 신설

-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을 위해 기업명·자매결연도시명 등을 도로명으로 부여하려는 자치단체의 수요가 계속 증가

※ 기업 존폐·이전 등으로 영구적인 법적 주소용 도로명으로는 부적합한 문제 상존

- 법적 주소용 도로명 외에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기업명칭 등을 명예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법적 주소용 도로명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

※ 미국 알바니시, 뉴욕시 등에서 운영(뉴욕시의 West 32nd St. 전체 구간 중에서 Broadway와 5th Ave. 사이의 일부 도로를 'Korea Way'로 명명)

③ 시군구청장이 『주소대장』을 작성·관리토록 의무 부여

-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와 변동 이력 등을 도로구간 단위로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는 공적장부로서 도입

- 도로구간의 위치, 길이와 폭, 도로명·건물번호의 변동사항 등 관리

※ 서식, 기재내용 등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 주소대장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도로명 주소관리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반 정보를 안정적·체계적으로 관리

④ 법률명칭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

- 현행 제명(「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형태의 주소를 단순히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제명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단순화하여 이 법률의 규율 내용을 간결하고도 함축적으로 표현

⑤ 구비서류 없는 민원처리 『e하나로민원』 서비스 확대

－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개통식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0.23(목)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및 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 구비서류 제출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의 브랜드 명칭)’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1> 완료보고회 행사안내

□ ‘e하나로 민원’ 서비스는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등(초)본, 법원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확인함으로써,

- 국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서류를 감축하고자 2002년 11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 2005년 말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1·2단계 구축사업과 금번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07.12~’08.8)을 추진, 본격화되었다.

□ 이번 ‘e하나로민원’ 서비스의 확대로, 기존에 공동이용되던 42종의 구비서류 이외에 수출입신고필증, 지적도 등 29종의 구비서류가 추가되어 총 71종으로 공동이용 구비서류 정보가 늘어나게 되며,

- 국민들이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금번에 7개 공공기관과 14개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모든 행정기관 및 50개 공공기관과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 구비서류 준비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 ‘e하나로민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7년 한해동안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약 2천8백만 건의 구비서류가 감축되어 1천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 * 국민들의 교통비, 시간 등 경제적 비용절감(630억원),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증명서 발급 비용절감(464억원)
- 전체 구비서류의 37%를 금융권에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금번 16개 시중은행으로의 확대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신청을 한번에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 전자민원G4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창구직원이 확인하도록 사전 동의를 하면,
 - 이후에 창구직원이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정보의 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함께,
 - 구비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 하나로만 민원처리가 완결되도록 하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공동이용 대상정보도 현재의 구비서류 중심에서 정책정보까지 늘려 나갈 예정이다.
 - 각 기관별로 제출이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상세내역 및 금번에 확대 서비스 되는 기관별 서비스 개통일정은 <첨부5>과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http://pr.shar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⑥ 중증장애인 공직문화 대폭 확대

- 중증장애인 특채, 맞춤형 수험편의 등을 통해 공직진출 기회 확대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08. 7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589명으로 전체 장애인 공무원(3,488명)의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매년 신규 공채 시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합격된 전체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은 15%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4년간('04~'07)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자(522명) 중 중증장애인은 77명

□ 이에 따라, 올해부터 행정안전부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공직의 문호를 대폭 확대하였다.

○ 금년에 정부 최초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채시험을 실시 중에 있으며, 21개 부처에 25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 708명이 응시하여 28: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 서류전형 결과발표(11.21), 면접(12.8~10), 최종합격자 발표(12.19)

○ 또한, 종전에는 확대답안지 제공 수준이었던 공채 시 수험편의를 중증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대필, 시간 연장 등 맞춤형 지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이러한 지원에 부응하여 올해 실시한 7·9급 공채시험의 중증장애인 응시율이 91%에 달해 전체 수험생 응시율(73%)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중증장애인의 비율도 매년 증가추세이다.

※ 전체 장애인공무원 중 중증 비율 : '06년 13%, '07년 15%, '08년 7월 현재 17%

□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됨에 따라 이의 조기 달성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중인 중증장애인 특채를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근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구 등 편의시설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공하는 한편, 임용 전에 직무기술 향상프로그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공직 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며,
 - 또한, 장애인 구분모집비율도 현행 5%수준에서 6%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모든 장애인에게 공직의 문호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들이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은 물론,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참여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중증 장애인 사례

2.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비장애인 못지않게 훌륭히 공직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례》

보통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직장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 정부내에는 비장애인 못지않게 훌륭히 공직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

- ◆ 뇌병변 2급의 중증장애인인 최모씨(5급)는 산림청에서 산림과학 연구과 제 혁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상사와 직장동료들로부터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영어에 능통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부서의 핵심멤버이다.
- ◆ 지체장애 1급인 박모씨(6급)는 국세청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05년 국세청 우수공무원 선발과 '06년 특별승진의 영예를 얻은 실력자로, 부서에서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도맡아한다.
- ◆ 청각장애 2급 박모씨(8급)는 지식경제부에서 보험부채 분석업무를 맡고 있는데,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7 농공단지 덩어리 규제 집중 개선 추진

- 행안부, 시·도로부터 16개 개선과제 발굴, 추진계획 수립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기존의 개별, 단순 기업규제 개선을 지양하고 덩어리(핵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규제의 짐은 같이 나누고, 지역의 경쟁력은 2배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농공단지 관련 덩어리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 시·도로부터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5개 농공단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공무원, 농공단지협의회 및 기업체 등 인터뷰를 통해 총 1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개선 과제 16건 : 농공단지 입지선정기준 합리화, 입주업종제한 절차 개선,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 등

○ 16개 과제중에서 지식경제부 등 농공단지 규제 관련 5개 부처와 제도개선을 협의한 결과,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도” 폐지, “수질오염총량제도” 개선,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 절차 개선” 등 5건의 과제를 개선기로 협의하였다.

※ 총 16개 개선과제 : 수용 5건, 수용곤란 6건, 중장기 검토 5건

□ 농공단지 관련, 덩어리 규제 개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충북, 강원 등 임업진흥권역이 많은 시·도에서 농공단지 조성시 대체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2009년부터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도”가 폐지되면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해 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산지관리 또한 효율화 될 전망이다.

- ※ 산림청에서 '08.10월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 충북 괴산군 전체면적 64천ha 중 76%가 산지, 임업용 산지 39천ha 중 임업 진흥권역이 25천ha로 64%를 차지하여 개발이 제한되었으나 제도개선으로 개발 활성화 기대됨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관련, 오염총량관리 기본 방침을 개정하여 본류 영향으로 시행지역에 편입되는 하류유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안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함으로써 원활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 당초 안전부하량을 기준배출부하량의 10%를 적용하여 최종 기준배출부하량을 적용하였으나,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유역에 한하여 안전부하량을 기준배출부하량의 5%로 변경(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 훈령 개정 추진 - '08. 10)

- ※ 논산시의 경우 당초 안전부하량이 700kg이었으나 5%로 개선시 350kg의 증가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이는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14개소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이며, 논산 국방과학산업단지 등 조성이 가능해 짐

-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10년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개정('08.12)

○ 기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농공단지 기반지원시설 합리화 및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 규제 등도 관련부처에서 조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아울러, 이번에 건의된 중장기 검토과제에 대해서는 2009년 까지 관계 부처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농공단지 관련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관련 법령·제도의 미흡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경 규제의 경우, 환경부에서 연구용역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대책이 마련 중에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입지난 해소와 지역산업 뿌리인 농공단지의 활발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공단지 명칭 변경, 농공단지 지정면적 제도 완화 등의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도 제도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고용저해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덩어리(핵심) 규제 개선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8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감정책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가운데 조 금만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정책화하는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는 지난 9.5(금),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일반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무 폐지’, ‘농가부채 경감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등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뀌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공감정책을 대대적으로 발굴, 개선해 오고 있다.
-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생활공감정책을 국민생활 전반에 확산시켜 서민생활

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 국민들은 세금, 주택,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조금만 바꾸면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10.23(목)부터 11.22(토)까지 1개월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 및 우편(정부 중앙청사 1407호 주민과), 전자우편(idea@oklife.go.kr)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 제출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정책화하여 실행 과제로 선정하게 되며 이중 10개의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표창(대통령상 3, 국무총리 3, 행정 안전부장관상 4)과 함께 포상금(5백만원~1백만원)도 주어지며, 제도개선 절차 등을 거쳐 서민생활 안정 및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 이번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 이외에 일간신문, Naver·daum 등 인터넷 포털, 정부부처 및 해당 시·도·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⑨ 2008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역 선정

－ 20개 소도읍에 4년간 국비 1,000억 등 총 4,000억원 집중투자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8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역 20곳을 선정·발표하였다.
-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72개 소도읍을 선정, 국비 2,600억원 등 총 1조 7,50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생활편익시설 개선, 지역특화산업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인프라 확충, 문화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 올해는 전국 10개 시·도로부터 1차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31개 소도읍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소도읍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내용, 기대효과, 추진의지 등을 심사하여 울주군 언양읍을 비롯한 총 20개 소도읍을 최종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20개 소도읍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각 소도읍별로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50억원, 민자 등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도심공영주차시설 증설, 가로·환경 등 주민생활편익시설 개선, 재래시장·중심상업지역 등 유통시설 현대화, 문화·복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 패키지화 사업이 집중 추진된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8 신규소도읍 대상지역 선정현황 >

<울 산>	울주	언양읍			
<경 기>	안성	공도읍			
<강 원>	삼척	원덕읍, 인제	인제읍		
<충 북>	음성	음성읍			
<충 남>	보령	웅천읍, 논산	연무읍		
<전 북>	군산	옥구읍, 익산	함열읍, 장수	장수읍	
<전 남>	장흥	관산읍, 장성	장성읍, 신안	지도읍	
<경 북>	영천	금호읍, 문경	문경읍, 상주	함창읍	
<경 남>	사천	사천읍, 의령	의령읍, 창녕	창녕읍	
<제 주>	서귀포	대정읍			

10 재난복구 관련 예산집행 신속성 대폭 확대

- 행안부, 10.31부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예산 성립전 집행 확대, 선 채무 부담행위 도입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한 예산 성립전 집행 확대, 先채무부담행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재해구호 및 복구’로 한정되었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의 대상을 ‘재해’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재난구호 및 복구’로 변경
- ② 신속한 재난구호 및 복구를 위해 중앙부처 또는 시·도로부터 자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도 소요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先채무부담 행위에 의하여 미리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
- ③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 중 시급하고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은 가능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기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
- ④ 개발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취·등록세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우선 공제하여 안정적인 학교용지 매입비용 확충방안 마련
- ⑤ 자치단체 예산체계를 ‘품목’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는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중심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로 전환
 - 「장·관·항·세항·목」의 체계를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체계로 전환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II 불이익 처분시 청문실시 확대로 국민권익보호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불이익 처분시 행정청의 청문실시를 적극 유도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처분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전구제절차인 “청문”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는 행정청이 주로 개별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개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더라도 인허가 취소 등 일정요건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이번의 청문 확대 추진은 새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및 100대 국정과제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삭제됐다.
 - “사전통지제도”는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과 구체적 내용·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당사자등이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절차이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당초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해석준칙 규정이었으나 국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법원에서도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규정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어 삭제하게 되었다.
- 이번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청의 청문실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 참여가 확대되어 부당·억울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이익처분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일정한 요건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구제절차로서 행정청의 청문실시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불이익처분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삭제 (안 제13조)
 - 법률의 위임없이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삭제함
- 불이익처분시 행정청의 청문실시 노력의무 신설 (안 제13조의2)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해산, 그 밖에 당사자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함.

청문 및 사전통지 관련법령의 내용

□ 청문 관련

○ 청문의 정의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청문실시 대상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불이익처분 사전통지 관련

○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 기한 등

○ 사전통지의 예외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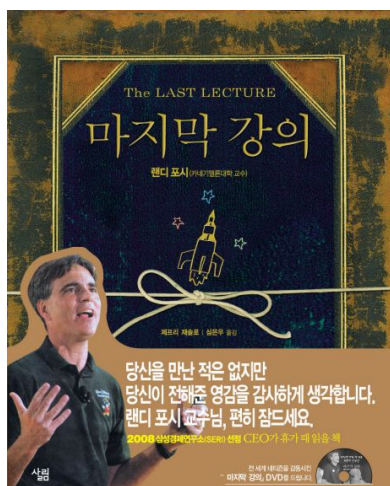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당해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때
 3.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내국인(단체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외국인(단체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gaha.go.kr/>]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마지막 강의

저자명 : 랜디 포시

출판사 : 살림

출판년 : 2008년

페이지 : 286

가격 : 12,000원

2007년 9월 18일, 말기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카네기멜론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 랜디 포시(47)가 피츠버그 캠퍼스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다. 학생과 동료 교수 등 400명을 앞에 두고 펼친 고별 강의는 유쾌한 웃음으로 시작해 이내 뜨거운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 명강의는 동영상으로도 제작되었고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다. 그의 마지막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대중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내기 시작했다. 누군가에 의해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동영상을 본 시청자 수만 해도 전 세계에 걸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공중과 매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7년 10월 22일, 미국의 인기 TV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 받은 그는 다시 한 번 수많은 방청객과 시청자들을 울렸다.

미국의 ABC방송은 2008년 4월 9일, 랜디 포시의 투병기와 그의 '마지막 강의' 내용을 특집으로 내보냈다. 이 방송을 통해 그는 한국계 풋볼스타 하인스 워드와 연습 경기를 하며 북아메리카프로미식축구리그(NFL)에서 뛰고 싶었던 어릴 적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그의 마지막 강의 내용을 보도했고, ABC뉴스는 그를 '이 주의 인물'로 소개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연을 전하며 '가족과 함께 이 용기 있는 사람의 강렬한 말을 듣길 바란다'라고 썼다.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는 올해 4월 8일에 미국에서 책으로도 엮어졌고, 출간 즉시 아마존과 뉴욕타임스의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